

2016. 6. 23.(목)

제348회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 청 북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I. 심 사 경 과
II. 제안설명 요지
III. 전문위원 검토 보고
①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결산 총괄
2. 일반회계 결산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다. 예산 이용·이체·전용
라. 계속비 집행
마. 예비비 지출
바. 이월사업비
사. 집행잔액
아. 채무부담행위(없음)
3. 특별회계 결산
② 기금 결산
③ 채권·채무 결산
④ 재산·물품 결산
⑤ 결산검사 결과 요약
⑥ 주요 재정사항 요약
⑦ 예비비 지출
IV. 심사의견 요지
V. 심 사 결 과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5월 31일, 충청북도지사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14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348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 6. 16.(목)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II . 제안설명 요지

(행정국장 박은상)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조 3,048억 5,051만원

실제수납액은 4조 4,205억 1,418만원

지출액 3조 9,018억 93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253억 5,900만원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68억 37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4억 1,897만원을 집행함.

Ⅲ. 전문위원 검토 보고

I.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 산		현년도 채 무 상 환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B)	세출(C)		소 계 (D)=(B-C)	이월액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총 계	4,304,851	4,420,514	3,901,810	0	518,704	132,728	1,024	384,952	
일반회계	3,721,513	3,809,740	3,458,003	0	351,737	125,354 (81,497)	1,024	225,359	
특별회계	583,338	610,774	443,807	0	166,967	7,374	0	159,593	
공 기 업	소 계	301,019	336,263	197,457	0	138,806	0	0	138,806
	지역개발기 금	301,019	336,263	197,457	0	138,806	0	0	138,806
기 타	소 계	282,319	274,511	246,350	0	28,161	7,374	0	20,787
	충북도립 대학운영	14,200	14,261	9,570	0	4,691	3,998	0	693
	의료급여 기 금	204,771	198,515	198,207	0	308	0	0	308
	농 어 촌 개발기금	16,280	16,268	15,349	0	919	0	0	919
	학교용지 부 담 금	19,150	17,751	3,001	0	14,750	0	0	14,750
	광 역 교통시설	5,281	4,687	1,844	0	2,843	0	0	2,843
	충청북도 균형발전	22,637	23,029	18,379	-	4,650	3,376	0	1,274

※ ()는 자금없는 이월액임 - 이월사업비에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는

- 세입결산 총액(실수납액)이 4조 4,205억 1,418만원으로

· 일반회계 3조 8,097억 4,015만원(86%)

· 특별회계 6,107억 7,403만원(14%)

예산현액 대비 2.7% 초과수납(1,156억 6,363만원) 되었으며

전년도(2014회계연도)보다 9.1%인 3,914억 4,421만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결산 총액(지출액)은 3조 9,018억 937만원으로

· 일반회계 3조 4,580억 258만원(88.6%)

· 특별회계 4,438억 679만원(11.4%)

예산현액 대비 90.6%를 지출하였으며 전년도(2014회계연도)

93%보다 2%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비 미수령에 따른 이월액

증가로 인해 예년보다 감소함.

- 다음연도 이월액은 2,142억 2,548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이며 이중

· 일반회계 2,068억 5,084만원(96.6%)이고

· 특별회계 73억 7,464만원(3.4%)으로

전년도 614억 5,902만원보다 1,527억 6,660만원(2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가.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㉑	징수결정액 ㉒	수 납 액			미수납액 ㉓=㉒-㉔
			수납총액 ㉕	과오납반환액 ㉖	실제수납액 ㉔=㉕-㉖	
합 계	4,304,851	4,461,117	4,436,242	15,727	4,420,514	40,603
일반회계	3,721,513	3,840,786	3,825,461	15,720	3,809,740	31,046
특별회계	583,338	620,331	610,781	7	610,774	9,557
공기업특별회계	301,019	336,263	336,263	0	336,263	0
기타특별회계	282,319	284,068	274,518	7	274,511	9,557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조 3,048억 5,05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조 4,611억 1,714만원(103.6%)임.
- 실제수납액은 4조 4,205억 1,41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일반회계 99.2%, 특별회계 98.5%)이며
예산현액 대비 103%(일반회계 102.3%, 특별회계 104.7%)임.
- 미수납액은 406억 29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9%(일반회계 0.08%, 특별회계 0.15%)임.
- 과오납반환액은 157억 2,757만원으로
수납총액 대비 0.5%(일반회계 0.04%, 특별회계 0.01%) 임.

나.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4,304,851	3,953,775	3,901,810	214,225	188,816
일 반 회 계	3,721,513	3,509,883	3,458,003	206,850 (81,497)	56,660
특 별 회 계	583,338	443,892	443,807	7,375	132,156
공기업특별회계	301,019	197,457	197,457	0	103,562
기타특별회계	282,319	246,435	246,350	7,375	28,594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조 3,048억 5,055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조 9,018억 937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1% (일반회계 93%, 특별회계 76%)임.

다. 결산상 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계	이 월 액 내 역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518,704	116,655	10,767	5,306	1,024	384,952
일 반 회 계	351,737	109,281	10,767	5,306	1,024	225,359
특 별 회 계	166,967	7,374	0	0	0	159,593
공기업특별회계	138,806	0	0	0	0	138,806
기타특별회계	28,161	7,374	0	0	0	20,787

- 일반회계 이월액은 3,517억 3,757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1,092억 8,137만원(31.1%), 사고이월은 107억 6,653만원(3.0%), 계속비이월은 53억 626만원(1.5%),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2,440만원(0.4%), 순세계잉여금은 2,253억 5,900만원(64.1%) 임.
- 지역개발기금 등 7개 특별회계 이월액은 1,669억 6,723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73억 7,464만원(4.4%) 나머지는 전액 순세계잉여금 1,595억 9,259만원(95.6%)임.

2. 일반회계 결산

가. 세입결산

□ 재원별 수납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제수납액	
합 계	3,721,513	3,840,785	3,825,461	15,720	3,809,740	31,046
지방세수입	798,200	997,260	981,665	13,716	967,948	29,312
세 외 수 입	88,246	90,819	89,110	24	89,086	1,734
지방교부세	523,506	526,639	526,639	0	526,639	0
보 조 금	1,876,057	1,788,638	1,790,618	1,980	1,788,638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35,504	437,429	437,429	0	437,429	0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조 7,215억 1,26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8,407억 8,574만원(103%)이며
- 실제수납액은 3조 8,097억 4,01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율은 99.2%임.

<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율 >

(단위 : %)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납 율	99.0	99.1	99.2	99.3	99.2	99.2

-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은 882억원(지방세 1,834억원, 세외수입 1억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854억원)으로 초과수납액이 전년(1,073억원)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보조금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세수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 현황 >

(단위 : 억원)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초과수납액	528	783	307	1,073	882

- 과오납반환액은 전년도(110억 5,700만원)보다 46억 6,335만원이 증가한 157억 2,035만원으로,
 - 이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세목은 지난년도수입으로 전체의 45.9%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취득세 32.4%, 보조금 12.1%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년도 수입지방세 137억원, 보조금이 19억원으로 전체 과오납반환액의 99.3%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수입과 보조금의 부과·징수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임.
 - 지난연도수입은 징수결정액 149억원중 수납총액이 64억원으로 수납액 비율이 42.9%이며, 수납액중 과오납반환으로 72억원이 반환되어 실수납액이 △8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으로 부과한 년도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지방세임에도 과오납반환액이 수납총액의 112%에 달하고 있어 과세관청에 대한 불신은 물론 재정운용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함.
 - 아울러 과오납 반환금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는 총 과오납반환액의 0.25%(4억원)에 불과한 반면 과세관청의 오류나 관계법령 적용 미숙으로 인한 착오부과는 6배에 가까운 15.3%(25억원)에 달하고 있음. 또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청구는 12.1%(19억원)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세 부과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과오납반환금의 대부분인 69.4% 109억원은 사유를 ‘기타로 분류되어 과오납 사유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과오납반환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인바,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오납반환금의 대부분이 과세관청의 오류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도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행정행위인 만큼 좀 더 세심한 지방세 부과·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과오납금 반환액 현황 >

(단위 : 억원)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반 환 액	225	102	350	110	157
징수결정액 대비반환율	0.8%	0.3%	1.1%	0.3%	0.3%

- 미수납액은 310억 4,55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10.7%)가 증가 되었으며, 이중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액이 157억 1,442만원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미이행 및 소송진행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운 면도 있겠으나, 징수결정액(149억원) 대비 실수납액(64억원) 비율이 4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억원)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미수납액	255	251	218	279	310
징수결정액 대비미수납율	0.9	0.8	0.7	0.8	0.8

□ 미수납액(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계	결 손 액	이 월 액
합 계	886,446	1,088,078	1,057,034	31,045	4,815	26,230
지 방 세	798,200	997,259	967,949	29,311	4,738	24,573
취 득 세	391,600	522,017	516,621	5,396	253	5,143
등록면허세	34,800	47,009	46,848	162	1	161
지방소비세	199,600	227,397	227,397	0	0	0
지역자원시설세	28,900	33,248	32,314	934	26	908
지방교육세	137,300	152,661	145,556	7,105	62	7,043
지난년도수입	6,000	14,927	-787	15,714	4,396	11,318
세외수입	88,246	90,819	89,085	1,734	77	1,657
경상적수입	19,294	19,362	19,219	143	0	143
임시적수입	68,952	71,457	69,866	1,591	77	1,514

- 지방세 미수납액은 293억 1,18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2.9%로 지난해(3.0%)보다 감소하였음.
- 취득세는 0.1로 지난해(1.6%)보다 1.5% 감소
- 지방소비세는 100% 수납되었음
- 지역자원시설세는 2.7%로 지난해(2.9%)보다 0.2% 감소
- 지방교육세는 4.6%로 지난해(3.5%)보다 1.1% 증가
- 지난해도수입은 105.3%로 지난해(77.1%)보다 28.2% 증가

-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7억 3,3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9%로 지난해(1.5%)보다 0.4% 증가하였음.

□ 결손액

(단위 : 천원)

구 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합 계	4,815,780	2,491,725	33,136	303,789	1,782,434	204,696
지 방 세	4,738,480	2,486,128	33,136	232,098	1,782,434	204,684
세외수입	77,300	5,597	-	71,691	-	12

- 2015년도 결손처분액은 48억 1,578만원으로 미수납액의 15.5%를 차지하고 있음.

그 사유를 보면,

- 무재산 52.7%(24억 9,173만원), · 행방불명 0.1%(3천 300만원),
- 시효소멸 6.3%(3억 300만원), · 배분금액 부족 37.0%(17억 8,200만원)
- 기타사유 4.3%(2억 47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음.

(단위 : 억원)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결손처분액	40	45	59	36	48

- 결손처분액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부과한 세금의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함.
- 특히, 결손처분으로 충청북도 도민 대다수가 차지하는 성실 납세자들과의 조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소멸시효전까지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완성 및 배분금액부족 등이라고 명확히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억원의 금액이 결손처분되고 있는 바, 관련 법령규정과 다르게 '기타' 사유로 결손처분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법·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

①법 제96조제1항제4호에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채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채납한 회사가 납부를 면제 받게 된 경우

□ 세입금 이월액(미수납액)

(단위 : 천원)

과 목	이월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 타
계	26,229,814	2,438,623	522,141	9,713,720	236,617	9,681,086	3,637,625
지방세 수입	24,573,412	2,275,736	490,154	8,913,931	236,617	9,388,895	3,268,078
취 득 세	5,143,298	461,245	34,001	2,561,652	0	1,701,288	385,112
등록면허세	160,463	11,156	7,227	58,938	131	66,755	16,255
지역자원시설세	908,308	140,980	20,358	309,314	5,646	340,138	91,872
지방교육세	7,043,020	608,083	169,534	2,120,843	10,013	3,044,112	1,090,435
지난년도수입	11,318,323	1,054,272	259,034	3,863,184	220,827	4,236,602	1,684,404
세 외 수 입	1,656,402	162,887	31,987	799,789	-	292,191	369,547
공유재산임대료	17,158	-	-	7,138	-	-	10,020
도로사용료	52,800	745	-	47,951	-	-	4,105
하천사용료	48,559	-	-	48,559	-	-	-
입장료수입	16,195	-	-	-	-	-	16,195
기타사용료	546	-	-	546	-	-	-
증지수입	1,336	-	-	-	-	-	1,336
기타수수료	5	-	-	-	-	-	5
사업장생산수입	3,686	-	-	-	-	-	3,686
공공예금이자수입	73	-	-	-	-	-	73
기타이자수입	2,263	-	-	-	-	-	2,26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67,485	-	-	-	-	-	167,485
변상금및위약금	41,892	-	-	19,230	-	-	22,662
과태료	18,985	-	802	5,569	-	-	12,613
시도비반환금수입	41,690	-	-	-	-	-	41,690
그외수입	194,092	-	-	148,179	-	4,146	41,767
지난년도수입	1,049,637	162,142	31,185	522,617	-	288,045	45,647

- 미수납액 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262억 2,981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7억 3,190만원(16.5%)이 증가되었음.

- 미수납 사유는

- 무재산 9.2%(24억원), 행방불명 1.9%(5억원), 납세태만 37.0%(97억원)
-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36.6%(96억원), 기타 13.7%(36억원)임.

- 납세태만이 전체의 37.0%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징수대책 방안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며, 다음연도로 이

월되는 지방세체납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조세 형평을 고려하여 체납자들의 지능적인 조세회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납징수 방법 및 다양한 재산 추적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적극 대처가 필요함.

나. 세출결산

□ 분야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3,721,513	3,509,882	3,458,002	206,850	56,658
일반공공행정	439,716	435,713	434,983	733	3,999
공공질서및안전	239,178	209,133	190,600	47,377	1,201
교육	199,560	195,165	195,165	-	4,395
문화및관광	139,551	120,779	120,331	16,890	2,330
환경보호	278,245	273,783	273,707	1,574	2,964
사회복지	1,108,889	1,098,817	1,095,764	10,336	2,789
보건	61,309	60,876	60,873	2	433
농림해양수산	519,202	456,492	453,815	63,265	2,122
산업·중소기업	114,087	108,242	106,908	4,599	2,580
수송및교통	208,460	185,907	175,475	31,306	1,679
국토및지역개발	131,244	114,757	100,164	30,768	312
예비비	28,909	-	-	-	28,909
기타	253,163	250,218	250,217	-	2,945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이 3조 7,215억 1,262만원으로
이중 3조 4,580억 258만원(93%)이 지출되고,
2,068억 5,084만원(5.6%)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69억 5,920만원(1.5%)이 발생하였음.
- 지출액은 3조 4,580억 258만원으로 전년도 3조 1,821억 8,700만원 보
다 2,758억 1,507만원(8.6%)이 증가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2,068억 5,084만원으로 전년도 614억 5,900만원으로 1,453억 9,182만원(23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바, 이월규모를 최소화하여 그 여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집행잔액은 569억 5,920만원으로 전년도 1,146억 4,800만원 보다 576억 8,880만원(△50.6%)이 감소되었음.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전년도 보다도 50.6%가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도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매년 수백억원씩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할 수 있으므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 시작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 세출결산 지출액을 보면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4,397억 1,594만원으로 이중 4,349억 8,304만원(98.9%)이 지출되고, 7억 3,375만원(0.1%)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9억 9,915만원(0.9%)이 발생하였음.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2,391억 7,803만원으로 이중 1,905억 9,985만원(79.6%)이 지출되고, 473억 7,672만원(19.8%)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억 146만원(0.5%)이 발생하였음.

-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1,995억 5,954만원으로 이중 1,951억 6,450만원 (97.8)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43억 9,503만원(2.26%)이 발생하였음.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1,395억 5,079만원으로 이중 1,203억 3,123만원(86.2%)이 지출되고, 168억 8,973만원(12.1%)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3억 2,984만원(1.7%)이 발생하였음.

-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2,782억 4,493만원으로 이중 2,737억 693만원(98.4)이 지출되고, 15억 7,361만원(0.5%)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9억 6,439만원 (1.1%)이 발생하였음.

-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1조 1,088억 8,943만원으로 이중 1조 988억 1,725만원 (99.1%)이 지출되고, 103억 3,610만원(0.9%)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7억 8,936만원(0.1%)이 발생하였음.

-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613억 899만원으로 이중 608억 7,323만원 (99.3%)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33만원(0.7%)이 발생하였음.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5,192억 248만원으로 이중 4,438억 1,525만원(85.5%)이 지출되고, 632억 6,534만원(12.2%)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억 2,189만원(0.4%)이 발생하였음.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1,140억 8,741만원으로 이중 1,069억 8,050만원 (93.8%)이 지출되고, 45억 9,908만원(4.0%)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5억 8,029만원(2.3%)이 발생하였음.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2,084억 5,968만원으로 이중 1,754억 7,538만원 (84.2%)이 지출되고, 313억 566만원(15.0%)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억 7,868만원(0.8%)이 발생하였음.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1,312억 4,399만원으로 이중 1,001억 6,402만원(76.3%)이 지출되고, 307억 6,840만원(23.4%)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1,157만원(0.2%)이 발생하였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90%이상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수송및교통분야와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각각 15%, 23.4%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 이월비율로 인해 80%대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예산 이용·이체·전용

예산이용 : 없음

예산이체

- 예산이체 : 총 141건에 260억 2,534만원임

- 전년도 34건 240억 366만 5천원 대비 건수는 415% 증가하였고, 금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무 권한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및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예산사용 부서를 직제에 맞도록 이체하여 사용한 것임.

- 이는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으므로 사유 발생시에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예산전용

- 예산전용액 : 총 26건에 11억 1,227만원임.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전용금액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총 26건		1,112,274	1,112,274		
공보관	행사운영비	3,000		2015-07-21	2015년 세출예산집행기준 변경에 따른 예산전용
	행사실비보상금		3,000		
여성정책관	행사운영비	6,350		2015-12-03	양성평등 토론회 참여자 수당 집행을 위한 예산 전용
	행사실비보상금		6,350		
여성정책관	행사운영비	2,140		2015-03-03	행사추진(식비, 다과등)을 위한 예산전용
	행사실비보상금		2,140		
여성정책관	행사운영비	700		2015-11-16	사업추진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사용
	행사실비보상금		700		
여성정책관	행사운영비	300		2015-12-0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행사운영비 감액,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사용
	행사실비보상금		30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2,520		2015-02-02	정부예산확보 T/F 운영을 위한 전용
	행사실비보상금		2,520		
정책기획관	행사운영비	5,000		2015-07-28	세출예산집행기준 변경에 따른 예산전용
	행사실비보상금		5,000		
법무통계담당관	행사운영비	2,500		2015-12-08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에 따른 토론회자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한 변경사용
	행사실비보상금		2,500		
안전총괄과	행사운영비	1,500		2015-03-17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전용
	행사실비보상금		1,500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2015-04-27	충북도에서 직접 행사추진
	행사운영비		10,000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2,500		2015-12-15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행사실비보상금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행사실비보상금		2,500		

부서명	통계목	전용금액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정보화담당관	행사운영비	1,600		2015-01-29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예산전용
	행사실비보상금		1,600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보조	22,500		2015-07-28	효행교육사업 일부를 도에서 시행하기 위한 예산전용
	사무관리비		22,500		
보건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		2015-05-06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 및 내시변경에 따른 과목변경
	국내여비		2,000		
경제정책과	출연금	976,490		2015-05-06	센터 법인등록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976,490		
경제정책과	행사운영비	3,800		2015-08-07	행사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숙박비 및 급식비 지출을 위한 예산전용
	행사실비보상금		3,800		
산림녹지과	행사운영비	3,720		2015-08-18	세출예산집행기준 변경에 따른 예산전용
	행사실비보상금		3,720		
문화예술과	행사운영비	5,750		2015-08-13	관객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산전용
	행사실비보상금		5,750		
혁신도시관리본부	행사실비보상금	38,000		2015-10-26	투자유치 설명회를 언론매체광고로 대체하기 위한 예산전용
	사무관리비		38,000		
대응구조구급과	행사운영비	3,800		2015-06-26	세출예산집행기준 변경에 따른 예산전용
	행사실비보상금		3,800		
충북경제자유 구역청충주지청	사무관리비	3,000		2015-10-13	충주 에코폴리스 홍보대사 위촉운영에 따른 예산전용
	기타보상금		3,000		
의회사무처	행사운영비	2,240		2015-03-03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전용
	행사실비보상금		2,240		
의회사무처	보수	1,800		2015-12-09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전용
	직급보조비		1,800		
농업기술원	보수	7,064		2015-12-14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직급보조비		7,064		
산림환경연구소	보수	1,000		2015-12-11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전용
	직급보조비		1,000		
여성발전센터	공공운영비	3,000		2015-11-30	가정폭력 피해여성 의료 및 구료비 적기지원
	의료및구료비		3,000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심의나 보고 없이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사후에 그 내용을 결산서에 명기토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임.
- 예산의 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내용이나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제도이나,

- 예산편성시에는 민간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하겠다고 편성하였다가 집행단계에 와서 도가 직접 집행하겠다고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운영활성화, 노인장애인과 효교육사업)

라. 계속비 집행

- **2015년도 계속비 집행액**은 스마트미래여성프라자 건립사업 등 4건 52억 8,037만원을 집행함.
- 계속비사업 4건 중 단양소방서 신설과 재난안전체험관 신설은 지출액이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단양소방서 신설에 대하여는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지 여부는 물론 사업추진 시기 조정 등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음.

마. 예비비 지출

-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0억 6,121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06억 2,071만 8천원(△57.7%)이 감소하였음.
- 학산천 원당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들 27건 68억 37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 **지출액**은 64억 1,997만원(94.3%)
- **다음년도이월액**은 3억 3,637만원(4.9%)
- **집행잔액**은 4,741만원이 발생되었음.
-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는 내제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하여 예비비에 대한 지출한계를 명시하고 있음

- 소송에 따른 판결이나 손해배상 발생 및 메르스 전파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지원 등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별로 예비비 지출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이월 사업비 집행

(단위 : 천원)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54	214,225,481	205	189,234,012	43	19,685,208	7	5,306,260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254건 2,142억 2,548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7%이며 지난해 대비 1,527억 6,646만원(248.6%) 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도정학술 연구용역 사업비 등 201건, 1,818억 5,937만원으로 이월예산의 84.9% 나타남.
 - 명시이월 사업들의 이월사유가 대부분 출납폐쇄기단축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국비미교부, 부지 미확보(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사나 용역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하여 부득이 하게 명

시이월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시 충분한 검토나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각종 행정 절차나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먼저 예산만 확보하고 있어 민원이나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부진한 사업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명시이월사업들의 예산현액 4,623억원중 지출액이 58.3% 2,694억원에 불과하고 있어 41.7%인 1,929억원이 이월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 특히, 205건의 명시이월 사업중 23건(일반회계)은 2015회계연도중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승인해 주고 있는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한다고도 할 수 있는 바, 향후에는 명시이월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확보된 예산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된 사업들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이월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첨부서류 567P)

○ **사고이월**은 과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등 43건에 196억 8,521만원 (이월예산의 9.2%)으로 나타남.

- 사고이월사유를 살펴보면

- 국비 미교부 5건 94억 4,791만원
- 장기계속공사 5건 8,694만원
- 토지보상 지연 7건 17억 1,545만원
- 기타(관계기관 협의지연 등) 26건 84억 3,491만원임

< 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을 도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정부가 적기에 지원하지 않거나, 도비 미매칭, 사업시기 지연 및 수요예측 등의 오류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례(5건 94억)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 및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명시이월 사유와 유사하게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동절기 공사 중지, 준공시기 미도래,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별 사고이월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사. 집행잔액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일반회계	56,659,197	7,784,221	1,762,147	17,831,065	1,024,297	28,257,467

- 집행잔액은 566억 5,919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이며, 전년도 1,246억 4,876만 1천원보다 5797억 8,956만 4천원(△46.5%)이 감소되었음.
-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7억 8,422만 1천원(13.7%)
- 예산절감 17억 6,214만 6천원(3.1%)
- 예산집행잔액 178억 3,577만 2천원(31.8%)
-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429만 6천원(1.8%)
- 예비비 282억 5,746만 7천원(49.9%) 등임.

< 검토의견 >

- 당초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편성은 없었는지, 사업계획 등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등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재검토 하여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 대하여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체 집행잔액 566억 5,919만 7천원에 대한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7억 8,422만 1천원(13.7%), 예산집행잔액 178억 3,577만 2천원(31.8%)을 차지하고 있음.
 -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전액 불용처리된 좋은 일자리 청년행복 프로젝트와 효 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교육사업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 아래 사업들에 대하여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불용액비율 : 20%이상 / 불용액 : 1,00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소관	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비고
공보관	도정 소식지 발간	70,200	21,150	30.1	
	기본경비	38,384	11,513	30.0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	40,000	11,008	27.5	
정책기획관	도정주요보고서 작성	34,400	21,811	63.4	
	도정홍보책자 발간	38,000	19,469	51.2	
	도정 주요시책업무 추진	126,000	51,514	40.9	
	도정 정책분석	40,000	19,600	49.0	
	도정 학술용역	1,655,920	439,350	26.5	
	의원 상해 등 보상	22,000	22,000	100.0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7,000	11,460	67.4	
	예산성과금운영	20,000	18,300	91.5	
	탄력적 재정운영	160,000	46,588	29.1	
	민간경상사업지원	200,000	127,250	63.6	
	민간경상사업지원	200,000	97,846	48.9	
	예비비 운영	651,270	651,270	100.0	
	예비비 운영	24,257,467	24,257,467	100.0	
	예비비 운영	4,000,000	4,000,000	100.0	
	내부거래 지출	2,279,200	574,722	25.2	
창조전략담당관	정부합동평가 추진	60,000	23,095	38.5	
법무통계담당관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60,000	20,160	33.6	
법무통계담당관	불합리한 규제발굴	22,100	15,294	69.2	
안전정책과	비상대비 훈련	39,000	18,271	46.8	
재난관리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27,372	13,154	48.1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68,350	30,147	44.1	
치수방재과	풍수해보험	127,000	98,760	77.8	
	철장천재해예방사업	400,674	190,812	47.6	
총무과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POOL)	80,000	16,427	20.5	
	공무원 교육훈련	222,000	50,303	22.7	
	강사 및 심사수당(POOL)	25,100	13,900	55.4	
	인력운영비	480,307	123,562	25.7	
정보통신과	인터넷서비스 운영	59,425	29,992	50.5	
복지정책과	결함가정아동보호	133,056	39,929	30.0	

노인장애인과	효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교육사업	46,500	46,500	100.0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시설관리	1,947,920	562,445	28.9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시설관리	38,310	20,900	54.6	
보건정책과	국가결핵예방사업	76,814	45,266	58.9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6,073,350	1,771,000	29.2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161,300	264,338	22.8	
투자유치과	충북 투자유치단 운영	50,280	16,193	32.2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40,000	10,195	25.5	
일자리기업과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	94,000	94,000	100.0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1,062,543	215,854	20.3	
국제통상과	국제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	280,000	162,779	58.1	
	국제통상업무 추진 외빈초청여비	75,000	18,132	24.2	
	국제통상업무 추진 민간인국외여비	20,000	16,541	82.7	
	해외 교류지역과의 우호교류 증진	20,000	16,834	84.2	
유기농산과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	70,000	14,489	20.7	
	충청북도 유기농산업 홍보관 운영	200,000	50,000	25.0	
원에유통식품과	농식품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46,680	32,109	68.8	
산림녹지과	산불감시활동	18,000	15,080	83.8	
문화예술과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200,000	40,065	20.0	
	지역 향토 가요제 지원	100,000	30,000	30.0	
	각종 예술행사 지원	80,000	50,180	62.7	
	대표적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250,000	100,000	40.0	
문화예술과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사업	1,850,000	1,236,000	66.8	
체육진흥과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48,800	10,158	20.8	
	각종 체육행사 지원	140,000	78,000	55.7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90,000	30,000	33.3	
관광항공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300,000	127,000	42.3	
	충북관광상품 판촉·홍보관 운영	170,000	55,318	32.5	
도로과	신니-노은 국지도건설	173,400	160,900	92.8	
	남일-문의 국지도건설	260,816	86,086	33.0	
	북충주IC-가금 국지도건설	543,059	481,886	88.7	
바이오정책과	바이오밸리 활성화 업무추진	30,000	20,500	68.3	
	오송바이오밸리 홍보	36,450	10,876	29.8	

바이오산업과	오송전시관 건립	100,000	44,200	44.2	
혁신도시관리본부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사업추진	93,230	19,806	21.2	
소방행정과	소방행정업무추진	349,634	72,605	20.8	
	소방행정업무추진	33,000	13,471	40.8	
	소방행정업무추진	29,690	21,917	73.8	
	기본경비	26,016	12,657	48.7	
청주서부소방서	현장활동능력배양	62,080	20,805	33.5	
의회사무처	의정활동업무추진	49,800	31,261	62.8	
	의정활동업무추진	100,750	21,287	21.1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	60,000	17,226	28.7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	16,000	13,530	84.6	
농업기술원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연구	57,619	11,939	20.7	
	채소 품질관리 연구	104,911	35,193	33.5	
	화훼 육종재배 연구	155,987	55,837	35.8	
	식물 공학 연구	120,935	32,796	27.1	
도로관리사업소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311,019	118,501	38.1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지방도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18,138	11,044	60.9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지방도관리 및 재료구입	18,925	13,896	73.4	
	지방도관리 및 재료구입	117,488	45,816	39.0	
산림환경연구소	사방사업	156,877	49,603	31.6	
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지원	60,000	14,890	24.8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100,600	75,869	75.4	
축산위생연구소	청사관리	443,334	158,759	35.8	
농산사업소	원종시설관리	105,100	28,033	26.7	
	원종생산 연구개발	32,850	21,052	64.1	
청남대관리사업소	청남대 운영 관리	54,900	10,997	20.0	
여성발전센터	인력운영비	60,959	29,072	47.7	
북부출장소	북부출장소 운영	55,363	18,990	34.3	
남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운영	20,644	12,385	60.0	
충북경제자유구 역청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	79,075	21,357	27.0	
	투자유치 활동지원	94,000	54,106	57.6	
	오송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조성지원	20,000	10,000	50.0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지원	14,000	14,000	100.0	

아. 채무부담 행위 : 없음

3. 특별회계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입잔액
합 계	583,338	610,774	443,807	166,967
공기업특별회계	301,019	336,263	197,457	138,806
지역개발기금	301,019	336,263	197,457	138,806
기타특별회계	282,319	274,511	246,350	28,161
충북도립대학운영	14,200	14,261	9,570	4,691
의료급여기금	204,771	198,515	198,207	308
농어촌개발기금운용	16,280	16,268	15,349	919
학교용지부담금	19,150	17,751	3,001	14,75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281	4,687	1,844	2,843
충청북도균형발전	22,637	23,029	18,379	4,650

-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010억 1,874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3,362억 6,29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2%
 - 세출결산액은 1,974억 5,72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
 - 차입잔액은 1,388억 57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

- 기타특별회계인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1억 9,991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42억 6,13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 세출결산액은 95억 7,04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
 - 차입잔액은 46억 9,09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47억 7,121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985억 1,526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
 - 세출결산액은 1,982억 65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
 - 차입잔액은 3억 87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임.

- **농어촌개발기금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2억 7,980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62억 6,78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 세출결산액은 153억 4,95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
 - 차입잔액은 9억 1,83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임.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91억 5,033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77억 5,08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
 - 세출결산액은 30억 6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
 - 차입잔액은 147억 5,02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2억 8,080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46억 8,72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
 - 세출결산액은 18억 4,37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
 - 차입잔액은 28억 4,34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임.

- **충청북도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26억 3,715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230억 2,85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
 - 세출결산액은 183억 7,87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
 - 차입잔액은 46억 4,98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임.

나.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과오납 반환금	실 제 수납액	미 수납액
합 계	583,337	620,332	610,782	7	610,774	9,557
공기업특별회계	301,018	336,263	336,263	-	336,263	-
지역개발기금	301,018	336,263	336,263	-	336,263	-
기 타 특 별 회 계	282,319	284,069	274,519	7	274,511	9,557
충북도립대학운영	14,200	14,261	14,269	7	14,261	-
의료급여기금	204,771	198,608	198,515	-	198,515	92
농어촌개발기금	16,280	16,268	16,268	-	16,268	-
학교용지부담금	19,150	17,751	17,751	-	17,751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281	14,152	4,687	-	4,687	9,465
충청북도균형발전	22,637	23,029	23,029	-	23,029	-

-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보면
지역개발기금 등 **7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833억 3,79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203억 3,14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107억 7,40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5%,
예산현액대비 104.7%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경우 2014회계연도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전액이 이월처리가 되었으며, 2015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66.9%가 미수납으로 이월처리되고 있으며, 현재 미수납액이 94억원에 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수립·추진하여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583,338	443,893	443,807	7,374	132,157
공기업특별회계	301,019	197,457	197,457	0	103,562
지역개발기금	301,019	197,457	197,457	-	103,562
기타특별회계	282,319	246,436	246,350	7,374	28,595
충북도립대학운영	14,200	9,656	9,570	3,998	632
의료급여기금	204,771	198,207	198,207	-	6,564
농어촌개발기금운용	16,280	15,349	15,349	-	931
학교용지부담금	19,150	3,001	3,001	-	16,14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281	1,844	1,844	-	3,437
충청북도균형발전	22,637	18,379	18,379	3,376	882

○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지역개발기금 등 7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833억 3,793만원으로

- 지출액은 4,438억 9,21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6.1%이며
- 집행잔액은 1,321억 5,64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3.9%임.

○ 회계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예산현액대비)은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지출액은 1,974억 5,721만원(65.6%)
- 집행잔액은 1,035억 6,153만원(34.4%)

-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 지출액은 95억 7,040만원(67.4%),
- 집행잔액은 6억 3,086만원(4.4%)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지출액은 1,982억 650만원(96.8%),
 - 집행잔액은 65억 6,465만원(3.2%)

- **농어촌개발기금운용관리 특별회계**
 - 지출액은 153억 4,952만원(94.8%),
 - 집행잔액은 9억 3,028만원(5.2%)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지출액은 30억 63만원(15.7%),
 - 집행잔액은 161억 4,970만원(84.7%)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 지출액은 18억 4,378만원(34.9%),
 - 집행잔액은 34억 3,703만원(65.1%)

- **충청북도균형발전 특별회계**
 - 지출액은 183억 7,870만원(81.2%),
 - 집행잔액은 8억 8,250만원(18.8%)

< 과다 발생 집행잔액 내역 >

특별회계명	집행잔액(백만원)	예산현액 대비
계	129,712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437	65.10%
○ 학교용지부담금	16,149	84.3%
○ 의료급여기금	6,564	3.2%
○ 지역개발기금	103,562	24.4%

-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한 사업 운용을 위해 수입·지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한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일반회계 집행율 93%에 비해 매우 낮은 76.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 한해 예산의 23.9% 가까운 규모가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는지, 자금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히 이월율이나 불용율이 과다한 특별회계의 경우 그 사유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방지책 등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② 기금결산

가. 기금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조성액	사용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154,256	48,903	31,415	171,693
청소년육성기금	879	113	13	979
여성발전기금	6,097	395	89	6,403
통합관리기금	3,047	1,714	1,156	3,605
지방채상환기금	47	1	48	0
남북교류협력기금	1,056	515	0	1,571
자활기금	1,796	346	77	2,065
사회복지기금	21,480	875	110	22,245
식품진흥기금	11,164	1,383	1,086	11,461
투자진흥기금	2,344	55	0	2,399
중소기업육성기금	47,268	29,933	19,079	58,122
체육진흥기금	2,093	529	0	2,622
재난관리기금	24,174	5,867	5,380	24,610
환경보전기금	26,252	4,876	2,340	28,788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566	1,858	1,910	514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993	443	127	6,309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현재 총 15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금은 특정한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 충청북도의 기금은
 - 2015회계연도에 총 15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4년도말 1,542억 5,647만원에서 2015회계연도중 489억 312만원을 조성하고, 314억 1,55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잔액은 1,717억 4,409만원임.
- 기금별로 보면
 -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말 8억 7,89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1,317만원을 조성하고 1,3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잔액은 9억 7,910만원임.
 -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60억 9,72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9,538만원을 조성하고 8,976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잔액은 64억 287만원임.
 -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30억 4,64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 1,446만원을 조성하고 11억 5,599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6억 492만원임.
 -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말 468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5만원을 조성하고 475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없으며 **2014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 말료되는 기금임.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10억 5,54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1,577만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억 7,119만원임.
 -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17억 9,69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4,586만원을 조성하고 7,7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억 6,580만원임.
 -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214억 8,062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7,492만원을 조성하고 1억 1,031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2억 4,523만원임

-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119억 6,44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 8, 205만 원을 조성하고 10억 8,575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4억 6,077만원임
- **투자진흥기금**은 전년도말 23억 4,39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471만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3억 9,870만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472억 6,84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99억 3,286만원을 조성하고 190억 7,9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81억 2,226만원임.
-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20억 9,27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2,871만원을 조성하고 미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억 2,151만원임.
-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241억 7,42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8억 6,642 만원을 조성하고 53억 7,968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6억 6,610만원임.
-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말 262억 5,17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8억 7,602 만원을 조성하고 23억 4,012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7 억 8,765만원임.
-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은 전년도말 5억 6,55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8억 5,876만원을 조성하고 19억 1,001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 억 1,428만원임.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년도말 59억 9,282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4,337만원을 조성하고 1억 2,739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3억 880만원임.

나. 기금운용 명세

< 수 입 >

(단위 : 백만원)

구분	이월액 (사고 등)	수 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 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138,475	10,843			26,410	14,777	71,523	3,271	4,862	6,787
여성 발전 기금		791	300					396		95	0.3
통합 관리 기금		21,341					14,733	1,622	3,271	1,714	
지방채 상 환기금		47					44	2		0.6	
남북교류 협력기금		530	500					14		15	
자활기금		567				313		221		28	4
사회복지 기금		3,757	550					2,882		323	1
식품진흥 기금		3,996				738		2,614		180	463
투자진흥 기금		2,398						2,343		36	17
중소기업 육성기금		77,201	3,000			25,358		47,268		1,574	
체육진흥 기금		562	500					34		28	
재난 관리 기금		6,663	5,433					796		346	87
환경보전 기금		11,605						6,729		364	4,511
충북도립 대학 기금		2,424	160					565		2	1,696
농촌전통 문예 기금		6,436	300					5,992		138	5
청소년 육성 기금		152	100					38		12	1

< 지 출 >

(단위 : 백만원)

구분	지 출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사 고 등)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계	138,475	11,597	18,615			84,744	22,271		1,155	92	
여성발 전기금	791	89				101	600				
통합관 리기금	21,341					1,141	19,000		1,155	45	
지방채상 환기금	47									47	
남북교 류협력 기금	530					0.2	530				
자활기금	567	77				490					
사회복 지기금	3,757	110				3,646					
식품진 흥기금	3,996	549	536			1,910	1,000				
투자진 흥기금	2,398					2,398					
중소기 업육성 기금	77,201	1,000	18,079			58,122					
체육진 흥기금	562					28	534				
재난관 리기금	6,663	5,379				1,283					
환경보 전기금	11,605	2,340				8,787	477				
충북도립 대학장학 기금	2,424	1,910				514					
농촌전문 인력육성 기금	6,436	127				6,308					
청소년육 성기금	152	13				9	130				

○ 기금운용 내역을 보면

- 수입에서 총수입액은 1,384억 7,559만원으로

- 자치단체출연금 108억 4,300만원(7.8%)
- 용자회수금 264억 1,035만원(19.1%)
- 예탁금원금회수 147억 7,779만원(10.6%)
- 예치금회수 715억 2,314만원(51.7%)
- 예수금 32억 7,153만원(2.3%)
- 이자수입 48억 6,200만원(3.7%)
- 기타(과징금, 과태료 등) 67억 8,777만원(4.8%)임

- 지출에서 총지출액은 1,384억 7,559만원으로

- 비용자성사업비 117억 9,701만원(8.5%)
- 용자성사업비 186억 1,500만원(13.4%)
- 예치금 847억 4,409만원(61.2%)
- 예탁금 222억 7,153만원(16.0%)
- 예수금 원리금상환 11억 5,537만원(0.8%)
- 기타 9,260만원(0.001%)임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5개 기금 중 여성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예탁하고 있음.

- 여성발전기금 600백만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530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1,000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534백만원
 - 환경보전기금 477백만원
 - 청소년육성기금 130백만원 등
- 총 32억 7,153만원이 예탁되었음.

< 검토의견 >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매년 증가되는 복지수요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2015년도 200억원을 예탁(목표대비 95%, 190억원 예탁)하고 있음.
- 지방채상환기금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채상환기금의 상환실적 및 적립액이 적어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의 기금 존속기한(2014.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함.
-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사업장 임대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저속득층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제공으로 자활·자립 조기 성공지원, 자활사업 참여자의 공동체 의식 형성 및 근로의식을 고취하여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고 있으나, 2014년도 집행율 38.2%에서 2015년도 42.8%로 집행율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세자금 신청자가 저조하여 연간 적정 예산 편성 및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속 발굴이 필요함.
-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성된 기금을 활용함에 있어 일부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로 보여있으며,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인 만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시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식품진흥기금은 최근에 한류열풍에 힘입어 중국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방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음식도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만큼 충북의 맛을 개발 할 수 있게 다양한 기금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은 재원조달을 대학회계 수입 및 국가장학금에 의존하고 있어 교외 기탁 장학금의 유치 및 기금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체육진흥기금은 일정기간 지출 없이 200억원 적립을 목표로 순세계 잉여금의 3% 범위내에서 조성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으로 26억원을 조성함.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대북관계 정세에 따라 적시에 안정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대북제재인 『5.24조치』 및 개성공단 철수, 유엔의 대북제재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청소년육성기금은 불우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생활정착 지원을 위해 조성하였으나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 사업실적(37명, 19백만원)이 저조한 바, 기금 추가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등의 지원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5년에는 조성액은 3억 9천만원이나 사용액은 8,9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최근 저출산 및 1인가구(싱글족)의 일반화 등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가구형태가 급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기금을 활용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보전기금**은 2007년도부터 운용하여 연도말 현재 287억 8,765만원을 적립하여 200억원 조성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향후에는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등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자연환경 보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유치가 불리한 남·북부지역(6개군)의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5,471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연도말 23억원 9,870만원을 적립하여 운용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은 299억 3,286만원인 반면 사용액은 190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보다 108억 5,386만원이 증가하여 2015회계연도말 조성액은 581억 2,226만원에 달하고 있음.
 - 2015년 당초예산에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기금목적으로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비로 47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출은 계획대비 38.3%인 18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압박 등으로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도의 중소기업도 경영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어, **실업률 감소와 고용확대를 위해 용자조건이나 이율 등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15년도말 현재 63억 8백만원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농촌전문인력 육성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발굴이 필요함.
-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저감시설 긴급 보수 및 재난안전관리 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계획대비 97%의 집행율로 도민의 안전 및 재난예방에 기여하였으나, 향후에는 대형 재난·재해 등의 증가로 재난관리 기금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법에서 정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적립금이 최대한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그동안 미 적립한 76억원에 대한 적립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③ 채권·채무 결산

1. 채권현재액

(단위:천원)

회 계 별	지난해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 현재액
합 계	806,874,034	244,597,152	239,880,474	811,590,712
일 반 회 계	50,959,360	5,589,521	10,366,116	46,182,765
특 별 회 계	704,650,154	194,573,286	178,801,463	720,421,977
공 기 업 특 별 회 계	670,401,600	171,600,760	163,758,560	678,243,800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33,519,715	22,972,526	15,042,903	41,449,338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728,839	0	0	728,839
기 금	51,264,520	44,434,345	50,712,895	44,985,970

○ 201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115억 9,071만 2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068억 7,403만 4천원보다 47억 1,667만 8천원(0.6%)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전년도 509억 5,936만원보다 47억 7,659만 5천원(△9.4%)이 감소된 461억 8,276만 5천원임.

- 특별회계는 전년도 7,046억 5,015만 4천원보다 157억 7,182만 3천원(2.2%)이 증가된 7,204억 2,197만 6천원으로,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가 전년도보다 78억 4,220만원(1.2%)이 증가되었으며,

- 기금은 전년도보다 62억 7,855만원(△12.2%)이 감소되었음.

2. 채무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난해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615,694,815	155,215,870	122,246,245	648,664,440
일반회계	20,420,000	-	17,160,000	3,260,000
차입금	20,420,000	-	17,160,000	3,260,000
공기업특별회계	595,274,815	155,215,870	105,086,245	645,404,440
지역개발채권	595,274,815	155,215,870	105,086,245	645,404,440

- **2015년도 채무현재액**은 6,486억 6,444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156억 9,481만 5천원보다 329억 6,962만 5천원(5.4%)이 증액됨.
 -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71억 6,000만원(△84.0%)이 감소된 32억 6,000만원임
 -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501억 2,962만 5천원(8.4%)이 증가된 6,454억 443만 9천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증가에 따른 것임.
- 충청북도가 갚아야 할 채무 중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71억원(△84.0%)감소된 6,156억원으로 이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지방채 상환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501억원(8.4%)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역개발채권발행 규모의 증가 때문이며 향후 상환하여야 할 자금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 재정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재산·물품 결산

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7,525,697,585	156,839,618	14,922,586	7,667,614,616
행 정 재 산	7,390,067,485	152,426,285	11,631,569	7,530,862,201
- 공용재산	6,457,383,760	45,893,303	10,512,362	6,492,764,701
- 공공용재산	801,943,501	106,307,981	1,119,207	907,132,275
- 기업용재산	130,175,900	225,000	-	130,400,900
- 보존용재산	564,324	-	-	564,324
일 반 재 산	135,630,099	4,413,333	3,291,017	136,752,415

-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6,676억 1,461만 6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7조 5,256억 9,758만 4천원보다 1,419억 1,703만 2천원(1.9%)이 증가된 것으로
 - 이는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 및 부지매입, 건물신축에 따른 행정재산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행정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7조 3,900억 6,748만 5천원보다 1,407억 9,471만 5천원(1.9%)이 증가된 7조 5,308억 6,220만원이며,
 - **일반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1,356억 3,009만 9천원보다 11억 2,231만 6천원(0.8%)이 증가된 1,367억 5,241만 5천원임.

2. 종류별 현황

(단위 :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7,525,697,584	156,839,618	14,922,587	7,667,614,616
토 지	1,072,577,098	26,567,142	7,670,966	1,091,473,275
건 물	368,601,018	19,557,296	813,653	387,344,661
입목축	7,034,766	-	-	7,034,766
공작물	5,930,922,124	108,958,975	5,703,279	6,034,177,821
기계기구	1,013,816	16	16	1,013,816
선 박	1,561,603	-	-	1,561,603
항공기	6,883,800	-	-	6,883,800
무체재산	3,271,337	17,389	19,673	3,269,052
유가증권	130,175,900	1,225,000	-	131,400,900
용익물권	3,656,122	513,800	715,000	3,454,922

- **2015도 재산 순 증감액**은 전년도말 현재액(7조 5,256억 9,758만 천원)대비 1,419억 1,703만 2천원(1.9%)이 증가됨.
 - 토 지 188억 9,617만 7천원 (전년도 대비 1.8%)
 - 건 물 187억 4,364만 3천원 (" 5.1%)
 - 공작물 등 기타재산 1,042억 7,721만 2천원 등으로 나타남.
-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의 경우 기준가격을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 취득 또는 처분토록 하고 있는 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 및 부지매입,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의 증가로 판단됨.

3.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천원)

구분	전년도말 보유	당해연도 증감실적						당 해 연도말 보유
		취 득			처 분			
		소계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수량	6,650	427	293	134	3,901	20	3,881	3,176
금액	43,295,415	8,841,990	7,938,244	903,746	7,539,370	486,106	7,053,264	44,598,035

○ 2015년도말 물품수량 및 현재액은

3,176개 445억 9,803만 5천원으로 전년도말보다 △3,474개, 13억 262만 원 (3.0%)이 증가하였음.(정수물품 변경 기준 58종 → 57종 : 소방용 호 흡기 3,721 → 0개)

○ 증감현황을 보면

- 증가부분은 구매 293개 79억 3,824만 4천원, 관리전환 등 134개 9억 374만 6천원으로 427개 88억 4,199만원이 증가하였고,
- 감소부분은 매각 20개 4억 8,610만 6천원, 관리전환 등 3,881개 70억 5,326만 4천원으로 3,901개 75억 3,937만원이 감소하였음.

< 검토의견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는 물품은 1개 품목(소방용호흡기 : 3,721개)가 제외되어 57종을 관리토록 변경됨에 따라 2014년 결산시 보고된 수량보다도 3,721개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물품이 신규로 취득, 처분되고 있어 물품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바,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재물조사이외에도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물품 증감 현황

품 명	단 위	전연도말 보유량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소계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6,650	427	293	134	3,901	20	3,881	3,176
미니버스	대	39	6	5	1	1	1	0	44
버스	대	9	2	2	0	2	2	0	9
일반승용차	대	69	4	3	1	0	0	0	73
미니밴또는밴	대	2	0	0	0	0	0	0	2
스포츠유틸 리티차량	대	47	4	4	0	2	2	0	49
덤프트럭	대	10	0	0	0	1	1	0	9
화물트럭	대	65	12	7	5	3	2	1	74
구급차	대	103	25	19	6	4	0	4	124
소방펌프차	대	17	27	27	0	0	0	0	44
소방물탱크차	대	5	1	1	0	0	0	0	6
소방화학차	대	1	2	2	0	0	0	0	3
소방사다리차	대	3	0	0	0	0	0	0	3
구조공작차	대	2	1	1	0	0	0	0	3
지휘차	대	1	0	0	0	0	0	0	1
도로보수차	대	2	0	0	0	0	0	0	2
노면청소차	대	3	0	0	0	0	0	0	3
분무기탑재차	대	12	3	0	3	3	0	3	12
견인트럭	대	1	0	0	0	0	0	0	1
탱크트럭	대	2	1	1	0	0	0	0	3
전기자동차	대	0	1	1	0	0	0	0	1
무정전자원장치	대	162	21	7	14	10	0	10	173
냉방기	대	319	15	9	6	14	0	14	320
항온항습기	대	54	27	25	2	0	0	0	81
냉난방기	대	553	57	35	22	26	9	17	584
실험용세척기	대	23	1	1	0	0	0	0	24
마량원삼분리기	대	57	1	1	0	0	0	0	58
건 조 캐 비 닷 또는오븐	대	58	14	3	11	2	0	2	70

실체현미경	대	66	11	0	11	2	0	2	75
전자현미경	대	4	0	0	0	0	0	0	4
신호발생기	대	22	0	0	0	0	0	0	22
분광광도계	대	31	6	4	2	2	0	2	35
기체 크로마 토그래프	대	35	2	2	0	1	1	0	36
액체 크로마 토그래프	대	32	0	0	0	0	0	0	32
고압증멸균기 또는소독기	대	69	0	0	0	2	0	2	67
노트북컴퓨터	대	348	80	61	19	51	1	50	377
구내교환장비	대	16	2	1	1	0	0	0	18
복사기	대	251	39	34	5	14	1	13	276
다기능복사기	대	116	23	16	7	13	0	13	126
비디오프로젝터	대	160	30	18	12	16	0	16	174
구내방송장치	대	30	2	1	1	1	0	1	31
비디오편집기	대	6	0	0	0	0	0	0	6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대	27	1	1	0	0	0	0	28
디지털캠코더 또는비디오카 메라	대	92	5	0	5	10	0	10	87
디지 털 비 디 오 레 코 더	대	5	1	1	0	0	0	0	6
소방용호흡기구	대	3,721	0	0	0	3,721	0	3,721	정수물품제외

※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행정자치부 고시(제2014-37호, 2014.7.31), 31개→58개 변경(제외 6개, 추가 33개)

5 결산검사 결과 요약

- 충청북도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김학철외 8명)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2016. 3. 31 - 4. 19)하여 총 18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음

< 결산검사 지적사항 목록 >

연번	소관부서	주요내용
1	산림환경연구소	사방사업 수의계약 최소화 및 주변여건 반영 사업시행 강구
2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정산절차 및 불용액 처리 부적절
3	예산담당관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 미흡
4	예산담당관실	기금설치조례 정비 및 기금관리운영계획 철저
5	회계과	공사계약 준공시 정산 철저
6	청남대관리사업소	청남대관리사업소 공유재산 임대료 지연징수 및 세입결산 부적절
7	충북도립대학	충북도립대학 공유재산 관리 부적절
8	건축문화과	학교용지 부담금 교부 소극적 대처
9	예산담당관실	결산상 잉여금 채무상환 검토
10	총무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징수 소홀
11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기금 운용 미흡
12	소방행정과	소방헬기 소모부품 구입 부정당업자 제재 부적절
13	유기농산과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부적절
14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적절
15	노인장애인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교육사업 추진 부적절
16	세정과	지방세 징수업무 소홀
17	세정과	세입예산 편성 소홀
18	문화예술과	국고보조 공모사업 예산집행 개선
19	예산담당관실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오류 개선

6 주요 재정사항 요약

○ 요약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유동자산	657,625	7.07%	535,931	5.96%
투자자산	484,028	5.20%	466,154	5.18%
일반유형자산	631,938	6.79%	622,670	6.92%
주민편의시설	375,016	4.03%	371,592	4.13%
사회기반시설	7,149,013	76.82%	6,986,369	77.69%
기타비유동자산	8,756	0.09%	9,975	0.12%
자 산 총 계	9,306,376	100.0%	8,992,691	100.0%
유동부채	293,378	32.22%	157,425	21.22%
장기차입부채	527,504	57.94%	491,314	66.24%
기타비유동부채	89,582	9.84%	93,014	12.54%
부 채 총 계	910,464	100.0%	741,753	100.0%
고정순자산	8,106,814	96.56%	7,913,471	95.91%
특정순자산	217,551	2.59%	205,515	2.49%
일반순자산	71,547	0.85%	131,952	1.60%
순 자 산 총 계	8,395,912	100.0%	8,250,938	100.0%
부채 및 순자산총계	9,306,376		8,992,691	

○ 충청북도의 지방공사·공단의 자산·부채를 포함한 재정상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총자산*	9,847,028	9,306,376	540,652
총부채	1,256,955	910,464	346,491

※ 총자산 9,847,028백만원은 지방공사·공단 출자금 130,176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공사·공단 출자금을 차감할 경우 총자산은 9,716,852백만원임.

○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분야	지표명	산식	2015	2014
재정 상태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 / 총자산 × 100	9.78%	8.25%
	②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77.00%	90.36%
	③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비율	부채 / 유형고정자산 × 100 ※ 부채 :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10.06%	8.13%
	④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장·단기 금융상품 / 재정자금 × 100	66.61%	36.66%
	⑤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현금창출자산 / 총부채 × 100 ※ 현금창출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 장기금융상품+(장기유자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07.66%	113.48%
	⑥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재정자금 / 차입부채 × 100 ※ 재정자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장·단기 금융상품	86.07%	69.77%
	⑦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224.16%	340.44%
	⑧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차감전) × 100	16.96%	20.34%
	⑨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단기민간융자금 / 장·단기 민간융자금 × 100	10.21%	20.62%
재정 운영	① 예산 대비 세출 비율	세출액(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예산현액(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100	92.52%	94.25%
	②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66.21%	57.89%
	③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비용 / 경상비용 × 100 ※ 이자비용 : 차입부채 이자비용	1.72%	2.34%
	④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0	87.67%	100.06%
	⑤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경상수익 / 총수익 × 100	42.05%	44.43%
	⑥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경상자체조달수익 / 경상수익 × 100 ※ 경상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	65.85%	60.34%
	⑦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미수자체조달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자체조달수익 × 100 ※ 미수자체조달수익 :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2.96%	2.83%
	⑧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미수세외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세외수익 × 100 ※ 미수세외수익 : 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12.80%	10.37%
	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비용 / 총비용 × 100	29.44%	27.65%
	⑩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자산 취득액 / 지출액 × 100	5.58%	5.81%
회계 책임	① 주민 1인당 총자산	총자산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5,875,416	5,695,423
	② 주민 1인당 총부채	총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574,805	469,781
	③ 주민 1인당 실질부채	실질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574,805	469,781
	④ 주민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2,315,154	2,134,195
	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자체조달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670,669	613,036
	⑥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지방세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616,379	547,448
	⑦ 주민 1인당 총비용	총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2,189,657	1,984,818
	⑧ 주민 1인당 민간등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183,805	192,227
	⑨ 공무원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1,162,127,276	1,086,841,138
	⑩ 공무원 1인당 총비용	총비용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1,099,132,398	1,010,770,704
	⑪ 공무원 1인당 급여	총급여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64,831,647	62,363,746

7 예비비 지출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별	지출 결정일	지출 승인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사유
계	28건		6,803,752	6,419,967		47,410	
1	미래전략 기획단	2015-02-03	3,000	2,999		1	미래전략기획단 신설(2015. 1. 1 조직개편)에 따른 예비비 지출
2	미래전략 기획단	2015-02-03	10,000	5,352		4,648	미래전략기획단 신설(2015. 1. 1 조직개편)에 따른 예비비 지출
3	미래전략 기획단	2015-02-03	4,837	4,837			미래전략기획단 신설(2015. 1. 1 조직개편)에 따른 예비비 지출
4	미래전략 기획단	2015-02-03	10,309	10,309			미래전략기획단 신설(2015. 1. 1 조직개편)에 따른 예비비 지출
5	미래전략 기획단	2015-02-03	9,900	8,900		999	미래전략기획단 신설(2015. 1. 1 조직개편)에 따른 예비비 지출
6	정책기획관	2015-06-24	440,000	399,449		40,550	충북도립대학 공학관 보강공사 예비비 지출
7	창조전략 담당관	2015-04-02	41,000	41,000			정부3.0 박람회 충북 전시관 운영에 따른 예비비 지출
8	안전정책과	2015-07-02	15,000	15,000			7.1 조직개편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예비비 사용
9	안전정책과	2015-07-02	1,331	1,331			7.1 조직개편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예비비 사용
10	안전정책과	2015-07-02	2,835	2,835			7.1 조직개편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예비비 사용
11	안전정책과	2015-07-02	40,037	39,737		299	7.1 조직개편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예비비 사용
12	치수방재과	2015-09-25	885,000	885,000			'15년 국가 재해예방사업비 매칭 도비분 예비비 사용 요청
13	치수방재과	2015-10-24	465,560	465,560			지방하천정비사업 예비비 지출
14	치수방재과	2015-10-24	1,440	1,440			지방하천정비사업 예비비 지출

연번	부서별	지출 결정일	지출 승인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사유
15	치수방재과	2015-10-24	520,000	520,000			지방하천정비사업 예비비 지출
16	치수방재과	2015-10-24	320,000	320,000			지방하천정비사업 예비비 지출
17	총무과	2015-11-27	19,000	18,147		852	故 김영삼 前 대통령 분향소 설치 및 운영
18	보건정책과	2015-07-28	163,500	163,500			메르스 전파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중인 의료기관을 지원
19	유기농산과	2015-06-20	2,000,000	2,000,000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예비비 지출
20	유기농산과	2015-08-12	10,470	10,470			농작물(과수)저온피해 복구에 따른 예비비 지출
21	축산과	2015-03-02	792,500	792,500			구제역 방역 2단계 대책 추진 관련 예비비 지출
22	문화예술과	2015-09-08	26,500	26,500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비비 지출
23	도로과	2015-05-13	3,104	3,103		710	행정소송 종결(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24	소방행정과	2015-09-08	25,705	25,645		59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25	대응구조구급과	2015-05-13	242,724	242,724			훈련 중 사망 의용소방대원 재해 보상금 지급
26	도로관리사업소	2015-09-25	381,000	169,626	211,373		'15년 국가 재해예방사업비 매칭도비분 예비비 사용 요청
27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2015-09-25	244,000	244,000			'15년 국가 재해예방사업비 매칭도비분 예비비 사용 요청
28	도로관리사업소 소옥천지소	2015-09-25	125,000		125,000		'15년 국가 재해예방사업비 매칭도비분 예비비 사용 요청

○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50억 6,121만 9천원

(일반회계 예산액대비 0.9%)이며,

지난해 대비 255억 5,949만 9천원(△42.2%)이 감소하였음.

- 학산천 원당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27건 68억 375만 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 지출액은 64억 1,996만 7천원(94.4%)
- 다음년도이월액은 3억 3,637만 3천원
- 집행잔액은 4,741만원이 발생되었음.

-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는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하여 예비비에 대한 지출한계를 명시하고 있음
- 소송에 따른 판결이나 손해배상 발생, 메르스 전파방지를 위한 진료소 설치 등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나,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별로 예비비 지출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심사의견 요지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고자 예비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송에 따른 판결로 손해배상 발생 및 메르스 등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 비용이 대부분이나,
-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등 특단의 대책 강구

- 각종 기금을 고유목적에 위해 다양한 사업의 지속적 발굴로 도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당초예산편성 사업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추경에 삭감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불용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등을 통해 가용재산으로 활용토록 하는 적극적 예산운용을 당부

V. 심사결과 : 원안가결